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인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정부는,

캄보디아왕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미얀마연방 그리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특별 및 차등 대우와 추가적인 유연성을 제공하면서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조기에 설립하자는 2004년 11월 30일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의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문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상기하고,

성장과 발전을 더욱 증진시키고, 이 지역 전체의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보다 역동적인 혜택을 제공할 포괄적인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그들 간에 채택하기를 원하며,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이 그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될 뿐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를 더 높고 보다 포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위한 제도가 자유화 과정에서의 포괄성, 의미있고 실질적인 자유화, 상호 이익의 증진,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규칙 및 규율과의 합치성이라는 합의된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공유된 믿음을 재확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이에 따라 협상된 그밖의 협정과 그들이 모두 당사국인 그밖의 다자 및 양자간 협력에 관한 법적문서 상의 각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고,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한 무역장벽의

제거가 조화로운 개발과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하며, 보다 넓은 국제적 협력, 특히 동아시아내의 협력에 대한 촉매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화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능력배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경제개발의 상이한 단계와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성, 특히 무엇보다도 국내 능력,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것을 포함하여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당사국들간 경제협력에 대한 참여 증가와 수출 확대를 촉진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총 칙

제 1.1 조
목 적

이 기본협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사국들 간 경제·무역 및 투자 협력의 강화 및 증진
- 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 및 증진과 아울러 투명하고, 자유롭고, 원활한 투자제도의 창설
- 다. 새로운 분야의 모색과 더욱 긴밀한 경제 협력 및 통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의 개발
- 라.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더욱 효과적인 경제통합의 촉진과 당사국들 간 개발 격차의 해소, 그리고
- 마. 당사국들 간의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 틀의 설치

제 1.2 조 정 의

문맥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기본협정의 목적상,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말한다.

“대한민국-AEM”라 함은 대한민국의 통상교섭본부장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제장관들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으로 구성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말한다.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라 함은 이 기본협정과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라 함은 브루나이다루살람·캄보디아왕국·인도네시아공화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말레이시아·미얀마연방·필리핀공화국·싱가포르공화국·타이왕국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기본협정”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이 기본협정을 말한다.

“GATS”라 함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로서 주해 및 보충적 규정을 포함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라 함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일부로서 주해 및 보충적 규정을 포함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이행위원회”라 함은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이행위원회를 말한다.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라 함은 캄보디아왕국·라오인민민주공화국·미얀마연방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한다.

“일반품목군”이라 함은 최혜국대우 관세율이 이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제1부속서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감축되고 철폐되는 품목의 목록을 말한다.

“당사국들”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집합적으로 말한다.

“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또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라 함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함은 1994년 4월 15일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및 그에 따라 협상된 그 밖의 협정을 말한다.

제 1.3 조 포괄적 경제관계를 위한 조치

당사국들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와 합치하게 다음

을 통하여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며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증진한다.

- 가.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있어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점진적인 철폐
- 나. 상당한 분야별 대상 범위에서 서비스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
- 다. 당사국들 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증진하는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투자 제도의 설립
- 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문과 그에 첨부된 핵심요소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하여 특별 및 차등 대우와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추가적인 유연성의 부여
- 마. 유연성이 상호주의와 상호 혜택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상되고 상호 합의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상품·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서의 민감 부문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 협상에서 당사국들에 대한 이러한 유연성의 부여
- 바. 효과적인 무역 및 투자 촉진 조치의 실시
- 사. 당사국들 간 무역 및 투자 연계의 심화를 보완할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동반자 관계의 확대를 위한 수단 및 방법의 모색과 합의될 수 있는 분야에서의 당사국들 간 경제협력의 확대. 그리고
- 아. 이 기본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한 적절한 절차 및 제도의 설립

제 1.4 조

법적 적용범위 및 그밖의 협정과의 관계

1. 다음 협정은 각각의 발효일에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법적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 가. 이 기본협정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를 포함한다)
 - 나. 제2.1조에 규정된 이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 다. 제2.2조에 따라 체결될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

라. 제2.3조에 따라 체결될 투자에 관한 협정
마. 제5.1조에 규정된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 그리고

사.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맥락에서 당사국들이
이 컨센서스로 상호 합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그밖의 협정

2. 이 기본협정에 달리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기본협정 또는 그에
따라 취하여진 어떠한 행위도 당사국이 당사자인 기준의 협정상의 그 당사
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효화하지 아니한다.

3. 이 기본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개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 상
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및/또는 경제협력의 그밖의 분야와 관련하여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정을 다른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또는 대한민국과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기본협정의 규정은 이러한 양자 또는
복수국간 협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장 자유화

제 2.1 조 상품무역

1. 당사국들은 이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상의 일반품목군
에 관한 규정·양허표 및 프로그램에 따라, 당사국들 간의 실질적으로 모든
상품무역에 대하여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규정(필요한 경우,
1994년도 GATT 제24조 제8항 나호에서 허용된 것은 제외한다)을 점진적
으로 축소하고 철폐한다.

2. 이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
되지 아니한다.

- 가. 점진적인 관세 축소 및/또는 철폐 프로그램과 그 밖의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자세한 규칙
- 나. 원산지 규칙
- 다. 양허의 수정
- 라. 비관세 조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 마. 긴급수입제한 조치. 그리고
- 바. 세계무역기구 규율과 비관세장벽의 축소 및 철폐

제 2.2 조 서비스무역

- 1. 당사국들은 GATS 제5조와 합치하게 상당한 분야별 대상범위에서 당사국들 간 서비스 무역을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서비스 무역의 점진적인 자유화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이러한 자유화는 다음을 지향한다.
 - 가. 제1항에 따라 대상이 되는 분야에 한해서 제3항에서 규정된 협정의 발효시점 또는 합의된 시한에 기초하여 다음을 통해 당사국들 간 실질적으로 모든 차별의 제거 또는 철폐의 규정
 - (1) 기존 차별조치의 철폐. 그리고/또는
 - (2) 당사국들 간의 서비스무역에 관하여 신규 또는 더욱 차별적인 조치의 금지
 - 단, GATS 제11조·제12조·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허용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 나. GATS에 따라 당사국들이 약속한 것 이상으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의 깊이 및 범위의 확대. 그리고
 - 다. 당사국들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및 배급을 다양화할 뿐 아니라 효율성과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국들 간 서비스 협력의 강화

3. 당사국들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상을 종료할 목적으로 2006년 초에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제 2.3 조
투 자

1. 당사국들은 사업 친화적인 환경과 함께 자유롭고, 원활하고, 투명하고 경쟁적인 투자 제도를 창설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투자제도의 자유화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이러한 협상은 다음을 지향한다.

- 가. 투자제도의 점진적인 자유화
- 나. 투자 협력의 강화, 투자의 촉진, 그리고 투자 규칙 및 규정의 투명성 증진. 그리고
- 다. 투자제도하에서의 보호의 제공

3. 당사국들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협상을 종료할 목적으로 2006년 초에 투자에 관한 협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다.

제 2.4 조
최혜국 대우

대한민국은 이 기본협정 발효 즉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아닌 모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세계무역기구 규칙 및 규율에 합치하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제 3 장
경 제 협 력

제3.1조 협력의 범위 및 이행

1. 당사국들은 상호이익의 기초위에서 다음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모색하고 수행한다.

- 가. 통관절차
- 나. 무역 및 투자 진흥
- 다. 중소기업
- 라.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 마. 관광
- 바. 과학 및 기술
- 사. 금융서비스
- 아. 정보통신기술
- 자. 농업·수산업·축산업·작물 및 임업
- 차. 지적 재산
- 카. 환경산업
- 타. 방송
- 파. 건설 기술
- 하. 표준 및 적합성 판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거. 광업
- 너. 에너지
- 더. 천연자원
- 리. 조선 및 해상 운송. 그리고
- 며. 영화

2. 당사국들은 실행 가능한 때에는 상호 합의된 시한에 따라 경제협력 사업을 수행한다. 이들 사업은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이행위원회에 의해 감독된다.

3. 이러한 협력의 세부사항은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에 구체적으로 명

시된다.

제 3.2 조 능력배양 프로그램 및 기술원조

1. 당사국들은, 대한민국과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하여, 특히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게 능력배양 프로그램 및 기술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상호합의에 기초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행 한다.
2. 당사국들은 빨리 콩코드 II, 투자지역 이니시어티브, 그리고 대한민국의 개발 경험과 전문성을 기초로 한 신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능력배양의 제공을 포함한 비엔티엔 행동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통합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한다.
3. 당사국들은 지역 및 소지역 개발을 증진함으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간,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 대한민국간의 개발격차를 축소하는데 있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통합 노력을 강화한다.
4. 당사국들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간, 그리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 대한민국간의 개발격차를 인식하면서 다음을 포함한 협력 이니시어티브를 통하여 지역 및 소지역 개발을 증진한다.
 - 가. 메콩 소지역
 - 나. 아에와디-차오 프라야 메콩경제 협력 전략(ACMES)
 - 다. 브루나이다루살람-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동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성장지대(BIMP-EAGA)
 - 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IMT-GT)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IMS-GT)와 같은 성장 트라이앵글
 - 마. 대 메콩소지역(GMS) 프로그램

- 바. 제2 동서 경제 회랑
- 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메콩 분지 개발 협력(AMBDC)
- 아. 싱가포르-쿠밍 철도 연결(SKRL) 사업. 그리고
- 자. 메콩강 분지 우선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메콩강 위원회와의 경험 공유

제 4 장 그 밖의 분야

제 4.1 조 새로운 분야로의 경제 동반자 관계 확대

포괄적인 대한민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데에 따라 당사국들이 상호 이해 관계를 가지는 새로운 분야로 경제 동반자 관계를 확대할 수단과 방법을 모색한다.

제 5 장 최종조항

제 5.1 조 분쟁 해결

1. 이 기본협정의 해석·이행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절차 및 제도를 통하여 해결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3항(서비스무역)·제2.3조제3항(투자)·제3장(경제협력)·제4장(그 밖의 분야) 및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은 이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 5.2 조

협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1. 이 기본협정에 규정된 협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무역협상위원회가 설치된다.
2. 대한민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무역협상위원회는 대한민국-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자유무역지대의 특정분야에 대한 협상을 수행하는 데에 자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3. 이 기본협정에서 예정된 협상의 개시 즉시 시작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러한 협상의 공식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의 협상 입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무역 제한적이거나 왜곡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 5.3 조

기본협정의 이행

1. 대한민국-AEM은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다. 당사국들의 고위경제관리 또는 그 지명자로 구성되어 설립되는 이행위원회가 대한민국-AEM의 감독 및 지도 하에 제2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히 소집된다.
2. 당사국들은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 가.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규정을 이행하고 적절히 적용하는 것을 조정·감독 및 감시 한다.
 - 나.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 다.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와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한다. 그리고
- 라.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당사국들이 이행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한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이행위원회는 자신의 기능을 달성하는데 있어,

- 가. 임시 또는 상설 위원회·작업반 또는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책임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기구에 특정 사안에 관한 임무를 부여 할 수 있다. 그리고
- 나. 당사국들의 합의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이행위원회는 대한민국-AEM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5. 이행위원회는 자신의 규칙과 절차를 수립하며, 대한민국-AEM은 이 규칙과 절차를 승인한다.

6. 이행위원회는 이 기본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일년 이내에 소집되며, 그 이후에는 매년 또는 달리 적절히 소집된다.

제 5.4 조 사무국 및 접촉선

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위하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이, 대한민국을 위하여는 대한민국 외교통상부가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지

원을 공동으로 제공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이행위원회에 보고한다.

2.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이행 목적을 위한 당사국들 간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 및 통보는 영어로 이루어지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국 및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3. 당사국들은 이 기본협정과 이 기본협정에 따라 체결되었거나 체결될 그 밖의 협정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상호간에 그 밖의 모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자 자신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요청받은 당사국의 접촉선은 그 사안을 담당하는 관서 또는 관리를 확인해주며, 요청 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 5.5 조 부속서 및 미래의 법적 문서

1. 경제협력에 관한 부속서는 이 기본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 당사국들은 이 기본협정의 규정에 따라 미래에 법적 문서를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문서는 각각 발효하자마자 이 기본협정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5.6 조 개정

이 기본협정의 규정은 당사국들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개정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 5.7 조 기 탁 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경우, 이 기본협정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에게 즉시 협정의 인증등본을 제공한다.

제 5.8 조 발 효

1. 이 기본협정은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그때까지 통보한 서명국들 중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이 기본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1개국이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국내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중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한다.

2. 당사국이 이 기본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국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된 날까지 이 기본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협정은 그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이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

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노무현
대통령

브루나이 다루살람 정부를 대표하여

하자 하>NN 볼키아
브루나이 다루살람 국왕

캄보디아 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삼택훈센
총리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수실로 밤방 요도요노
대통령

라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분낭 보라ҷ
총리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표하여

압둘 아마드 바다위
총리

미얀마 연합 정부를 대표하여

소 원
총리

필리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싱가포르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리 시엔 룽
총리

태국 정부를 대표하여

탁신 치나왓
총리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판 반 카이
총리

부 속 서

경제협력

제 1 조

통관절차

당사국들은 통관문제에 관한 당국 간의 협력이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당사국들의 정책과 절차에 합치하게,

- 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순화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공유 한다.
- 나. 비밀 정보를 제외하고 통관절차와 관련된 최적 관행, 이행 및 위험관리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다. 통관절차에 있어 정보기술의 적용과 감독 및 검사제도의 개선에 대한 협력과 경험의 교환을 촉진한다. 그리고
- 라.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통관 법률과 규정을 공표하고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과 필요한 경우 통관 접촉선들 간에 통관절차를 교환하는 것을 보장한다.

제 2 조

무역 및 투자의 진흥

1. 당사국들은 정부기관 및/또는 그 밖의 기관을 통하여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진흥하는데 협력한다.
2.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대한민국에 대한민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센터의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개시
 - 나. 무역 및 투자 사절단, 정기적인 비즈니스 세미나 및 포럼, 그리고

전자적 연계(전자적 비즈니스 매칭)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와 같은 무역 및 투자 진흥 활동의 조직. 그리고

다. 법률실무에서의 지식과 경험을 보급하는 전문가 훈련프로그램 및 공동세미나를 통하여, 특히 신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법률제도 개발의 지원과 무역 및 투자 관련 법률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제 3 조 중소기업

1. 당사국들은 당사국 각국의 국가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의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당사국들의 중소기업 및 관련기관 간에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는데 협력한다.
2.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경영기술 개발, 기술 이전, 상품의 질 개선, 공급체인연계, 정보기술, 그리고 자금조달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접근과 같은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중소기업이 협력 및/또는 최적 관행의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기회의 창설
 - 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들에 대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과 대한민국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그리고
 - 다. 당사국들의 관련기관이 중소기업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하여 토의하고 협력하며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하도록 장려

제 4 조 인적자원 관리 및 개발

당사국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번영이 인적자원의 지식과 기술에 주로 의존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 가. 당사국들의 학자, 교사, 학생, 교육기관 회원, 그 밖의 과학 또는 교육활동 종사자의 교류를 장려한다. 그리고
- 나. 당사국들의 관련기관이 당사국 노동인력의 능력과 기술의 향상에 대하여 토의하고 협력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5 조 관 광

당사국들은 관광이 당사국들 간 상호 이해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과 관광이 당사국들의 경제에서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 가. 각 당사국으로의 방문입국자 증가를 위한 관광 개발 및 증진에 관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과 대한민국 내의 웹사이트 간의 연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나. 당사국들의 관광기관이 관광 훈련과 교육에 관한 협력, 특히 동남 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영토 내에서 대한민국 관광객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관광안내원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훈련 및 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 다. 당사국의 영토 내의 관광 당국과 전문 관광기관 간의 워크숍 및 세미나를 통하여 당사국들의 영토에서 관광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캠페인을 수행하는데 협력한다.
- 라. 당사국들의 영토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증진하는데 협력한다. 그리고
- 마. 관광 및 관련 부문에 대한 관련 통계·정책 및 법률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 6 조 과학 및 기술

당사국들은 과학과 기술이 중장기적으로 당사국 각국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 가. 훈련프로그램의 설치와 과학 및 기술 정보의 교환을 모색한다.
- 나. 나노기술·재료기술·전자기술·우주기술·생명공학 및 기술 관리와 같은 특히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과학의 공동 연구개발 사업 수행과 그 밖의 형태의 과학 및 기술 협력을 검토한다.
- 다. 당사국들의 연구기관 간 연계를 장려한다. 그리고
- 라. 연구개발시설 및 과학 장비를 상호 호혜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7 조 금융서비스

당사국들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다음의 목적으로 협력한다.

- 가. 시장 추세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의 교환을 포함하여 규제 협력 및 개발의 증진
- 나. 자본시장을 포함하여 금융 시장 및 기반시설 개발의 촉진
- 다. 인적자원 및 기관 능력 개발에 대한 기술 지원의 제공과 위험관리 분야에서의 경험 교환
- 라. 금융서비스 자유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데 대한 지원. 그리고
- 마. 자본시장 개발에서의 능력 배양 제공

제 8 조 정보통신기술

1. 당사국들은 국내 및 국제적 맥락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사업관행이 민간부문의 주도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보통신기술 이용을 통하여 당사국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가져다주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의 발전을 증진

하도록 협력한다.

2.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전자 상거래의 증진
- 나. 소비자,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신생 서비스 및 차세대 네트워크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비스 이용의 증진
- 다.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인적자원 개발
- 라. 공동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그리고
- 마. 스팸 방지 노력의 증진

3. 협력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정보통신기술 정책,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서비스의 창출, 전자 정부 서비스의 제공, 컨텐츠 개발,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사생활 보호에 관한 정보와 전문지식의 교환
- 나. 네트워크 기반시설, 창조산업 및 멀티미디어 산업,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기반시설 개발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수행
- 다. 당사국들 영토 내에서 정보통신기술 산업에 대한 민간 및/또는 공공 기업 투자의 장려 및 촉진. 그리고
- 라.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사업 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제 9 조
농업·수산업·축산업·작물 및 임업

1. 당사국들은 생태 농림업 및 생태관광을 포함하여 농업·수산업·축산업·작물 및 임업에서 협력과 기술 협력의 기회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당사국들의 상호 혜택을 위하여 협력을 실시한다.

2. 협력 분야는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정보 교환
- 나. 능력 배양 및 인적자원 개발

- 다. 공동 연구개발. 그리고
- 라.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기술 지원

3. 협력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가. 신규 기술을 포함하여 제1항에 규정된 분야에 관련된 정보 교환의 증진 및 경험의 공유
- 나. 공동 연구사업의 증진
- 다. 전문가 교류
- 라. 수학 후 단계를 포함하여 기술 지원의 제공
- 마. 세미나·훈련 및 워크숍의 수행
- 바. 농장 및 관련 생산센터에 대한 학습 방문의 장려
- 사. 실험실의 기술·능력 및 노하우의 강화, 그리고
- 아. 당사국들이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에서의 협력

제 10 조
지적 재산

- 1. 당사국들은 지식기반경제에서 경제적 경쟁력의 한 요소로서 지적 재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적재산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을 증진한다.
- 2.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지적재산의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경험의 공유
 - 나. 지적재산 분야에서 각 당사국의 인력에 관한 정보의 교환, 경험의 공유 및 훈련의 장려
 - 다. 각 당사국의 가입을 조건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의하여 운영되는 특허협력조약상의 국제 조사 및 국제예비조사의 수행
 - 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인식의 증진
 - 마.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의 영토 내에서 특허 및 상표를 포함하여 지적재산 데이터베이스의 향상 및 현대화를 촉진하는데

대한 지원의 제공. 그리고

바. 지적재산의 보호에 관한 상호 협력의 강화

제 11 조

환경산업

1. 당사국들은 경제개발·사회발전 및 환경보호가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축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당사국 각국의 관심 있는 정부기관·산업·기구 및 연구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할 방법을 모색한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다음의 환경협력 활동을 추구한다.

- 가. 압축천연가스기술 및 정책과 같은 환경기술 및 정책에 관한 협력
- 나. 산업의 환경능력 배양에 관한 협력과 환경산업의 정보 및 경험의 교환
- 다. 환경과 관련된 인적자원의 교류 및 교육에 관한 협력. 그리고
- 라. 상호 합의하는 그밖의 형태의 환경협력

제 12 조

방 송¹⁾

1. 당사국들은 국경 간 문화교류의 통로로서의 방송의 역할과 디지털 경제에서의 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방송기술의 발전이 당사국들이 상호 혜택을 도모하는 데 있어 도전이자 기회라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각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과 대한민국은 자국 관심에 따라 양자적 기초 위에서 방송분야에서의 협력활동을 개발하고 촉진한다.

2. 방송부문을 규율하는 당사국들의 법률 및 규정을 조건으로, 협력분야

1) 이는 투자 및 서비스무역에서의 당사국들의 자유화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방송 및 관련부문에서 상호 합의하는 통계와 정책·법률 및 규정에 관한 정보의 교환
- 나. 새로이 등장하는 방송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의 수행
- 다. 방송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의 증진. 그리고
- 라. 적절한 경우 방송 재송신의 상호 교환의 장려

제 13 조 건설 기술

당사국들은 적절한 경우 다음 분야에서 협력한다.

- 가. 인적자원 및 건설 개발
- 나. 건설 기술
- 다. 국제적 프로젝트의 협력. 그리고
- 라. 기반시설 건설 디자인

제 14 조 표준 및 적합성 판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당사국들은 무역의 촉진에 있어서의 산업, 농업 및 작물에 대한 기술 규제, 표준 및 적합성 판정절차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한다.

- 가.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표준, 기술 규제 및 적합성 판정 절차에 대한 의견 및 정보의 교환
- 나. 상호 합의에 따라 표준 및 적합성 판정 절차에 대한 법률 및 규정의 교환
- 다.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전문가 및 직원의 교류
- 라. 당사국간의 무역 흐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능한 상호인정약정 및 협정의 모색

- 마. 합의된 분야에 대한 세미나, 훈련 및 훈련 파견, 직원 교류, 그리고 규제 대화를 포함하여 표준, 기술 규제, 도량형 및 적합성 판정에 관한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
- 바. 표준 및 적합성 판정에 관한 관련 국제 및 지역 포럼에서 당사국들간 협력의 강화, 그리고 국가 기술규정의 개발의 기초로서, 적절한 경우, 국제표준 및 적합성 판정 지침의 활용 증진
- 사. 적절한 경우, 당사국들간 시험프로그램과 시험실험실 및 인증 네트워크의 개발
- 아.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의 산업표준 개발에 있어 기술 지원의 모색. 그리고
- 자. 당사국들이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밖의 분야에서의 협력

2. 당사국들은 농업, 수산업, 동물 및 식품 제품과 작물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있어서의 위생 및 식물위생(이하 “위생 및 식물위생”이라 한다)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상호 혜택을 기초로 다음에서 협력한다.

- 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정보 교환
- 나. 위생 및 식물위생과 관련된 사건 발생에 관한 정보 교환
- 다. 유통 및 포장 제도의 개선
- 라. 훈련 및 전문가 교류의 조직을 통하여 증진될 수 있는 당해 분야에서의 인적자원의 개발
- 마. 신기술의 개발 및 증진. 그리고
- 바. 당사국들이 확인하고 합의할 수 있는 그밖의 분야에서의 협력

제 15 조 광업

1. 당사국들은 광업 부문에서의 협력이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 가.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동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에너지 및 광

물 매장량에 대한 탐사 및 채취, 광업 부산물 처분, 그리고 폐광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의 증진에 대하여 협력한다.

- 나. 광업부문에 대한 무역 및 투자의 촉진을 장려한다.
- 다.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최적 활용에 있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광물개발 관행의 증진에 대하여 협력한다.
- 라. 광업 정책 및 기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을 장려한다.
- 마. 민간부문간의 사업 제휴를 증진하고 개발한다. 그리고
- 바. 광업의 발전 및 증진을 목표로 훈련·세미나·워크숍 및 전문가 교류를 수행한다.

제 16 조 에너지

당사국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속도를 고려할 때 미래에 당사국들의 영토내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 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증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 나. 압축천연가스기술 및 정책과 같은, 그러나 이에 한정되지 않은 대체 및 재생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협력한다.
- 다. 기반시설 개발, 자원 개발, 투자 촉진 및 새로운 에너지 절약 기술의 적용에 있어 협력한다.
- 라. 전문가 교류를 장려한다. 그리고
- 마. 민간부문 간의 사업 제휴를 증진하고 개발한다.

제 17 조 천연자원

당사국들은 천연자원의 적정한 관리 및 효율적 이용이 당사국 각국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다음에서 협력한다.

- 가. 지하수 격납 및 운송을 모의실험하고 예측하는 적절한 수학적 모델의 개발 및 활용, 폐기물 저장/처분과 농공업 활동이 지하수질

에 미치는 위험의 평가, 그리고 지하수 보호지역의 설정

- 나. 에너지 및 광물 매장량에 대한 탐사·채취 및 활용, 광업 폐기물 처분, 그리고 폐광의 재활용에 관한 기술의 향상
- 다. 투자 촉진 활동. 그리고
- 라. 지하수 및 지표수를 포함한 수자원의 종합관리,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정보기술의 적용

제 18 조 조선 및 해상 운송

- 1. 당사국들은 무역 및 개발에서의 해상 운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당사국 각국의 관련 기관을 통하여 조선 및 해상 운송 분야에서 협력한다.
- 2. 그러한 협력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정보 교환의 수행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 나. 전문가 교류의 증진

제 19 조 영 화²⁾

- 1. 영화산업이 당사국들간의 이해 및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수단으로서 갖는 잠재력과 당사국 각국 경제에서의 영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인식하여, 관심 있는 당사국들은 당사국 각국의 관련 기관을 통하여 당사국 각국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2. 협력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가. 영화 전문가의 교류

2) 이는 투자 및 서비스무역에서의 당사국들의 자유화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 나. 정보 교환. 그리고
- 다. 영화제 주최 및 참가에서의 협력